

의안번호	제534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집중호우 피해주민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0년 10월 5일

집중호우 피해 주민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

의안
번호

534

제출연월일 : 2020년 10월 5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집중호우로 건축물 피해를 입은 주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필요성

- 충북은 지난 7~8월 집중호우로 8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는바,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주민에 대한 세부담 경감필요
- 집중호우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세부담 경감으로 직접적 위로 및 생활안정에 기여

*충주, 제천, 옥천(군서·군북면), 영동, 진천(진천읍·백곡면), 괴산(청천면), 음성, 단양
※ 과거 감면사례 : '17.7월 청주·괴산 집중호우 / 지역자원시설세 10백만원

〈 사유시설 피해현황 〉

▶ 건 물 : 895동 47억원(유실·전과 56동, 반과 78동, 침수 761동)

▶ 농경지 : 전(밭) 1,268ha 254억원

※ 총 피해규모 : 이재민 1,810명 / 공공시설 포함 2,500억원 / 피해복구비 6,985억

□ 감면내용

- 감면세목 :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 감면대상 : 유실, 전과, 반과, 침수 건축물(주택 포함)
- 감 면 율 : 전액감면(100%)
- 감 면 액 : (추계) 445건 9,653천원
- 감면적용 : '20년도 7, 9월분에 소급 적용
- 감면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3. 의안전문 : 붙임

4. 관계법령 발체 : 붙임

5. 비용추계서 : 붙임

집중호우 피해 주민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감면세목 :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2. 감면대상 : 유실, 전파, 반파, 침수 건축물(주택 포함)
※ 피해구분 기준은 2020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의함
3. 감 면 율 : 전액감면(100%)
4. 감 면 액 : (추계) 445건 9,653천원
- 주택 385건 4,604천원 / 건축물 60건 5,049천원
5. 감면적용 : '20년도 7, 9월분에 소급 적용 (기 납부자 환급 예정)
6. 감면방법 :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

관련 법령(발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4. 3. 24., 2020. 1. 15.>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27., 2013. 3. 23., 2014. 1. 1., 2014. 11. 19., 2017. 7. 26., 2020. 1. 15.>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대상·적용 대상자·세목·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정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12. 31., 2016. 12. 27.>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5. 12. 29.>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15. 12. 31., 2020. 1. 15.>

⑥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1. 15.>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20. 1. 15.>

□ 지방세법

제141조(목적)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7. 24.]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29.>

1.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화력발전(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이하 이 장에서 "특정부동산"이라 한다)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29.>

1. 발전용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
2. 지하수: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3.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4.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
5.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6. 화력발전: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7. **특정부동산: 특정부동산의 소유자**

제144조(납세지)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개정 2011. 3. 29.>

1. 특정자원
 - 가. 발전용수: 발전소의 소재지
 - 나. 지하수: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
 - 다. 지하자원: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 라.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
 - 마. 원자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 바. 화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2. 특정부동산

가.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나.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다. 토지: 토지의 소재지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29., 2014. 12. 31.>

1.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2. 지하수

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4.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5.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6.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1. 소방시설에 해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3.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만분의 2.3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지,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과 제2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5호 및 제6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개정 2011. 3. 29.>

제147조(부과·징수)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개정 2013. 1. 1., 2016. 12. 27.>

1.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1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2. 제1호 본문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제146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납세의무자가 제2호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가. 삭제 <2013. 1. 1.>

나. 삭제 <2013. 1. 1.>

-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의 규정 중 제114조, 제115조 및 제122조(제122조의 경우는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8. 12. 31.>
- ③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신설 2018. 12. 31.>
- ④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려면 건축물, 선박 및 토지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 ⑤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별 세액산정 및 그 밖에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31.>
- ⑥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12. 31.>

□ 충청북도 도세조례

제18조(세율) 법 제146조제4항에 따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같은 조 제2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20조(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3항에 따른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화력발전,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은 충청북도 전 지역으로 한다.

집중호우 피해 주민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2020년 7~8월 집중호우 피해 주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피해 건축물에 대한 2020년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를 감면함

2. 비용 발생요인

- 2020년 7~8월 호우로 유실, 전파, 반파, 침수된 건축물에 대한 2020년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면제

3.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4. 비용 추계결과

- 추계 전제 : 2020년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기준

〈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개요 〉											
▶ 과세기준 :		매년 6월 1일									
▶ 과세대상 :		소방시설로 이익을 받는자의 건축물, 선박									
▶ 납부고지 :		재산세(7월, 9월)와 병기고지									
▶ 세 율 :		0.04%~0.12%									

- 추계 결과 : 445건 9,653천원
 - 주택 385건 4,604천원 / 건축물 60건 5,049천원

(단위 : 건, 천원)

계		청 주		충 주		제 천		보 은		옥 천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445	9,653	23	714	61	1,533	84	1,254	0	0	12	1,190

영 동		증 평		진 천		괴 산		음 성		단 양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6	217	0	0	18	2,998	1	5	16	240	194	1,502

- 재원 조달 : 자연재난에 따른 감면으로 별도 재원조달 불필요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2020년에 한정된 감면으로 추계 생략

작성자 : 기획관리실 세정담당관 최 재 훈